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공직윤리제도 | 3 |
| 공직자 재산등록 | 3 |
| 주식 백지신탁제도 | 3 |
| 퇴직자 취업제한 | 3 |
| 공직자 선물신고 | 3 |

| | | | |
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업무소개 | 공지사항 | 자료실 | 적극행정 면책상담 |
| 감사결과 | 공직윤리제도 | | |

공직자 재산등록

- 대상: 군수, 군의원, 4급 공무원,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, 부동산 유관부서 전직원
- 내용: 본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의 재산사항을 신고
- 심사: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,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, 강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

주식 백지신탁제도

- 대상: 재산공개대상자
- 내용: 본인과 이해관계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 모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사실신고(직무관련성이 없을 시 보유가능)

퇴직자 취업제한

- 대상: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자
- 기간: 퇴직일로부터 3년간,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
- 내용: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취업을 금지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, 예외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업허용
- 취업심사대상: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법무법인 등, 영리사기업체

공직자 선물신고

- 대상선물: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,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
- 신고방법: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은 해당 선물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고, 수령신고를 받은 단체의 장은 등록 기관에 30일 이내에 이관함

GANGJIN

Web Contents

